

산학겸임교사 등의 자격기준 (제42조제1항관련)

산학겸임교사	명 예 교 사	영 어 회 화 전문강사	다문화언어 강사	강 사
1.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동 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산업체·공공기관·비영리기관 및 사회단체(특성화중학교, 특성 화고등학교 및 대안학교의 경우 에는 종교단체를 포함한다)에서 담당과목과 관련되는 분야의 직 무에 3년 이상 근무한 자 2.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· 기능분야의 산업기사 이상, 서비 스분야중 사업서비스의 전문사무 분야 자격증소지자 또는 기타 서 비스분야의 산업기사 이상의 자 격증 소지자(자격기본법에 의한 민간자격소지자로서 임용권자가 이와 동등한 능력이 있다고 인정 하는 자를 포함한다)로서 산업체 에서 담당과목과 관련되는 분야 의 직무에 3년 이상 근무한 자 3. 임용권자가 인정하는 국제대회 및 국내대회(문화예술·체육·기 능 분야) 입상자로서 담당과목과 관련되는 분야의 직무에 3년 이 상 근무한 자 4.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·전승 교육사, 명장 등으로서 담당과목 과 관련되는 분야의 전문성이 인 정되는 자 5.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자 격이 있는 자로서 교육감이 따로 정하는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	학교운영위원회 에서 정하는 자 격기준에 해당 하는 자. 다만, 학교운영위원회 가 설치되지 아 니한 학교의 경 우에는 학칙 또 는 학교법인의 정관 등이 정하 는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	1. 초등 학교 2 급 정교 사 이상 자 격 증 소지자 2. 표시 과 목 이 영 어 인 중 등 학 교 2급 정 교 사 이상 자 격증 소 지자 3. 학사 학위 소 지자 또 는 이와 같은 수 준 이상 의 학력 이 있는 자 중 영 어 능 력을 고 려 하 여 교 육 감 이 따로 정 하 는 자 격 기 준에 해 당 하 는 자	1. 표시과목이 영 어 외의 외국어 인 중등학교 2 급 정교사 이상 자격증을 가진 사람 2. 학사학위 소지 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 의 학력이 있는 사람 중 영어 외의 외국어능 력에 관하여 교 육감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 는 사람. 다만, 교육감이 관할 구역 안의 인력 수급 여건상 부 득이라고 인 정하는 경우에 는 고등학교 졸 업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 의 학력이 인정 되는 사람 중 영어 외의 외국 어능력에 관하 여 교육감이 정 하는 기준에 해 당하는 사람으 로 할 수 있다.	1. 대학(유치원의 경 우에는 전문대학을 포함한다)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 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담당과목과 동일 또는 유사한 과목을 전공한 자 2.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 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담당과목과 관련되는 분야에 2년 이상 실무경 력이 있는 자 3.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 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담당과목과 관련되는 분야에 4년 이상 실무경 력이 있는 자 4. 제1호 내지 제3 호외의 자로서 교 육감이 따로 정하 는 자격기준에 해 당하는 자